

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1925호, **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,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3년 결산에 따라, 「예치금」이 당초 5,316백만원에서 8,172백만원으로 2,856백만원 증가하여, 2024 회계연도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금액이 당초 5,316백만원에서 8,172백만원으로 2,856백만원 증가하였음
 - 증가사유 : ‘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’ 집행잔액(2,515백만원), 이자수입(204백만원) 및 융자금 원금수

입 (191백만원) 증가, 기타수입(14백만원), 기본경비 집행잔액 (11백만원),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(△79백만원)

나. 이에, 지출계획상 「여유자금 예치」 금액이 당초 511백만원에서 3,367백만원으로 2,856백만원 증액(559.4%)되었음

[2024년 수입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장·관·항	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	7,931	10,787	2,856	36.0
세 외 수 입		225	225	-	-
	경 상 적 세 외 수 입	225	225	-	-
	이 자 수 입	225	225	-	-
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		7,706	10,562	2,856	37.1
	보 전 수 입 등	7,069	9,925	2,856	40.4
	용 자 금 원 금 수 입	1,753	1,753	-	-
	예 치 금 회 수	5,316	8,172	2,856	53.7
	내 부 거 래	637	637	-	-
	예 탁 금 및 예 수 금	637	637	-	-

[2024년 지출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 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	7,931	10,787	2,856	36.0
장 애 인 복 지 증 진 사 업 지 원		7,400	7,400	-	-
	장 애 인 단 체 및 사 업 지 원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7,400	7,400	-	-
	장 애 인 전 세 주 택 지 원 사 업	7,400	7,400	-	-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	511	3,367	2,856	559.4
	보 전 지 출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511	3,367	2,856	559.4
	여 유 자 금 예 치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511	3,367	2,856	559.4
기 타		20	20	-	-
	행정운영경비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	20	20	-	-
	기금관리비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20	20	-	-

III. 검토의견

-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은 '23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**예치금회수**가 증가(28억 5,600만원)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**여유자금 예치**(28억 5,600만원)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¹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 - 동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을 당초 지출계획(5억 1,100만원)보다 559.4%, 28억 5,6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(33억 6,700만원)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〈표 3-1〉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지출합계		7,931	10,787	2,856	36.0
장애인복지증진사업지원		7,400	7,400	-	-
일반예산(재무활동)		511	3,367	2,856	559.4
보전지출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	511	3,367	2,856	559.4
여유자금예치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	511	3,367	2,856	559.4
행정운영경비 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		20	20	-	-

※ 자료근거 : ①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지출계획,
②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4. 5.27) 재구성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① 생략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○ 동 계정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'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'24년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, 이와 연동하여 여유자금을 지출계획중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의 운용계획을 변경 요청한 것임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²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2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

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
2. 장애인단체의 지도·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
3.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
4.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
5.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
6.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
7.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
8.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
9.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